

팀 장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200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2004. 12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1. 최근 국제통상환경	1
2.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12
가. 총 괄 / 12	
나. 국별 동향 / 17	
다.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특기사항 / 45	
3. 2004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48
가. 총 괄 / 48	
나. 주요국별 전망 / 50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60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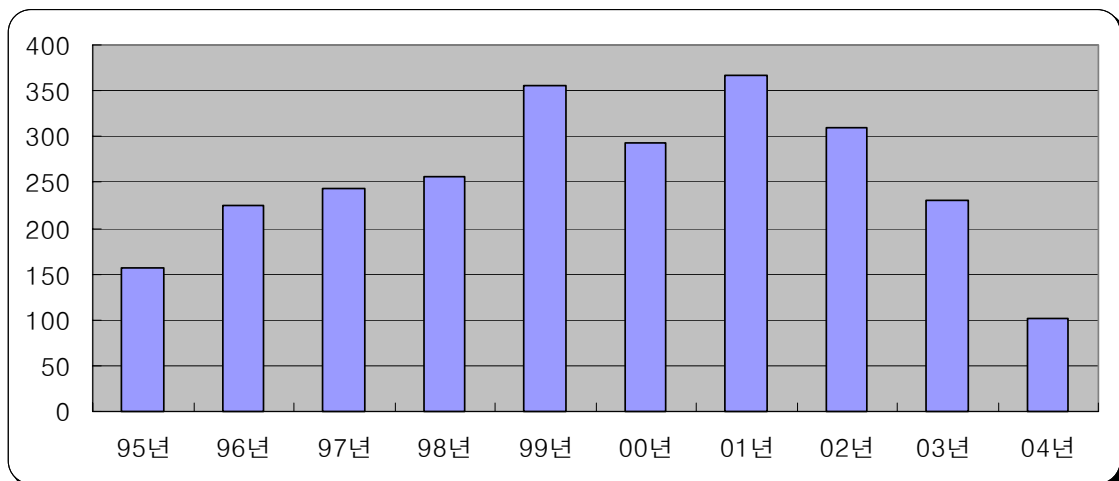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 활용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4년 6월 말까지 반덤핑 조치 2537건 기록

- 1995년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9년 6개월 간 전체 41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 이전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 개별국으로 집계)에 의해 총 2,537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되었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총 101건을 기록하였음.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주) '04 년도는 상반기 기준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전체 2,537건 중 386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한국은 194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 최근 3년 반 동안,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중국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대만 등으로 나타남.

○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 동안 10대 발동국 중심,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발동국 현황>

순 위	'01		'02		'03		'04(상반기)		누계치 (‘01+‘02+‘03+‘04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인도	79	인도	81	인도	46	미국	21	인도	210
2	미국	76	미국	35	미국	37	EC	13	미국	169
3	EC	29	중국	30	중국	22	터키	13	중국	77
4	아르헨	26	태국	21	한국	18	중국	11	EC	69
5	캐나다	25	EC	20	캐나다	15	아르헨	7	터키	57
6	호주	23	터키	18	멕시코	14	브라질	6	호주	49
7	브라질	17	호주	16	인니	12	캐나다	4	캐나다	49
8	터키	15	아르헨	14	터키	11	인도	4	아르헨	48
9	중국	14	페루	12	호주	8	남아공	4	브라질	35
10	페루	8	멕시코	10	남아공	8	인니 말련 멕시코	3	한국	33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도는 2004년 상반기를 제외한 최근 3년 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를 기록
-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상기 누계치 (‘01~‘04상반기) 기준, 중국이 기존의 메이저 반덤핑 조치 활용국이었던 EC를 제치고 반덤핑 조치 주요 발동국 3위를 차지했다는 점임.

-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 동안 10대 피소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피소국 현황>

순 위	'01		'02		'03		'04(상반기)		누계치 ('01+'02+'03+'04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중국	53	중국	51	중국	52	중국	23	중국	179
2	한국	23	한국	23	미국	21	대만	14	한국	74
3	대만	19	러시아	18	한국	17	한국	11	대만	61
4	인니	18	대만	16	일본	16	미국	8	미국	56
5	태국	16	인도	16	인도	15	러시아	6	인도	48
6	미국	15	일본	13	대만	12	인도	5	일본	46
7	브라질	13	인니	12	EC	10	태국	5	인니	42
8	일본	13	태국	12	인니	8	인니	4	태국	40
9	인도	12	미국	12	말련	8	일본	4	러시아	35
10	싱가폴	12	EC	10	태국	7	베트남	4	EC	29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현저한 감소세에 있으나 중국, 한국, 대만 등의 주요 반덤핑 피소국('01~'04 상반기)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 건수는 별다른 감소세를 나타내지 않음.
- 따라서, 2001년을 정점으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총 피소국이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
- ※ WTO 반덤핑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총 피소국 수는 68개국('01) > 56개국('02) > 40개국('03)> 23개국('04 상반기)임으로 나타남.

- 개시된 반덤핑 조사 대상품목을 분류시,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 철강/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겟인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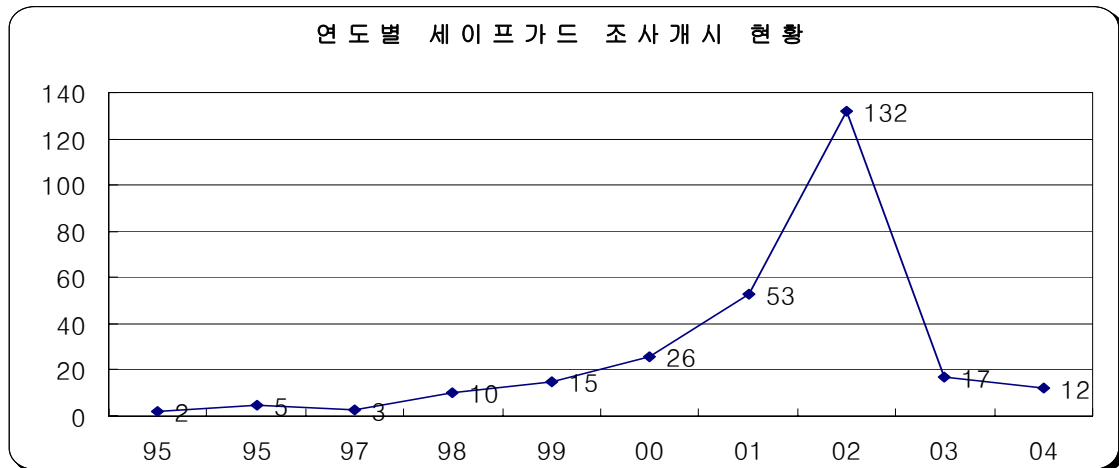
	'01		'02		'03		'04(상반기)	
산업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화학	121	33	133	42.9	95	41.1	36	35.6
철강/금속	136	37.1	95	30.6	52	22.5	20	19.8
의류/직물	26	7.1	9	2.9	14	6	15	14.8
전기/전자	25	6.8	9	2.9	14	6	2	2
제지류	7	2.7	7	2.2	20	8.6	6	5.9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의류/직물은 반덤핑 조사의 주요 타겟은 아니나,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쿼터가 해제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상황(unforeseen developments)을 제외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연평균 200~250건 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최근 전반적인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감소가 향후 반덤핑 조치 활용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후 개시될 반덤핑 조사 건수가 상기 변동폭의 윗부분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MFA 섬유쿼터
- 시장 접근 및 보조금 감축 측면에서의 점진적인 농산물 부문의 자유화
- 철강산업의 경기 변동 : 현재 높은 수요에 힘입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감소시, 중국산 철강은 궁극적으로 세계 철강가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동 산업 내 보호 무역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건수가 기존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감소



주) '04년 자료는 1.1~10.18 기간 동안 이루어진 WTO 통보 건수 기준

자료원 : The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4 (~'02),

WTO Safeguard Committee Annual Report 2003, 2004 ('03~)

- '01, '02년에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서 촉발된 도미노 현상 때문임.
-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은 전통적인 반덤핑 조치 활용국이 아님.

<'03, '04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현황>

'03		'04 (1.1~ 10.18)	
국명	개시 건수	국명	개시 건수
에콰도르	5	터키	5
필리핀	3	아르헨	1
헝가리	2	콜롬비아	1
불가리아	1	EC	1
EC	1	인도	1
에스토니아	1	자메이카	1
인도	1	몰도바	1
몰도바	1	페루	1
폴란드	1		
브라질	1		
합계	17	합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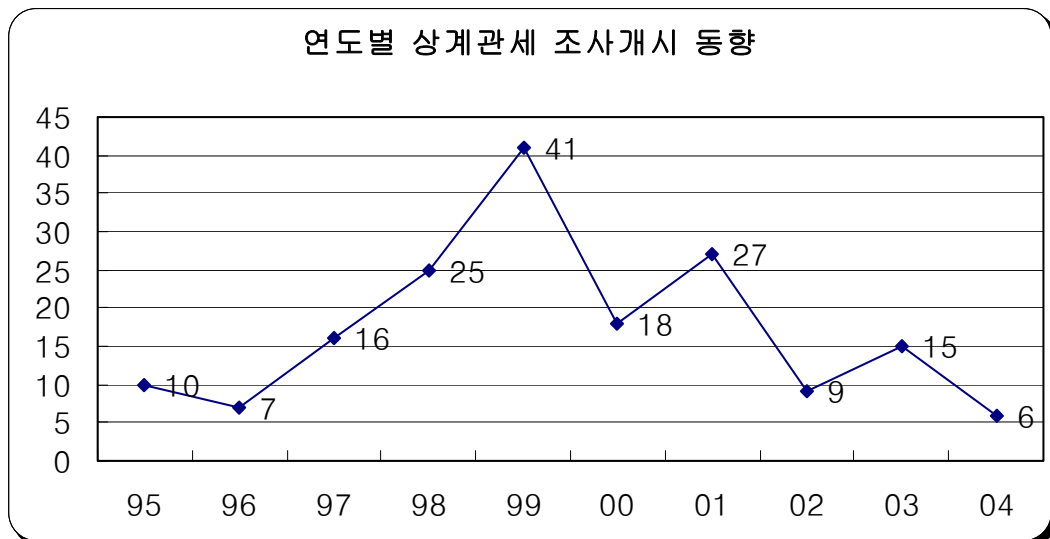
자료원 : WTO Safeguard Committee Annual Report 2003, 2004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는 국가는 기존의 반덤핑 조치 활용국이 아니며, 대부분 개도국에 해당
-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가 손쉽게 동 조치를 활용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무역 왜곡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MFA 쿼터가 2005년 1월 1일부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섬유 산업에서 반덤핑 조치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반보조금/상계관세]

□ '03년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04년 상반기 조사 개시 건수는 이의 절반에 못 미침.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 '04년은 상반기 기준임.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 상계관세 조치는 적절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게 됨.
- 덤핑 마진 계산보다, 보조금 계산법은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이므로,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계산을 위해 덤핑 마진 산정법을 원용할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시장 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status)로 분류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 개시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캐나다, EC 등은 이제까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04년 상반기 캐나다는 중국을 대상으로 2건의 상계관세 조사 개시

-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기존의 국가 개입이 상계가능 보조금의 형태로 특정산업에 특혜를 수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향후 보조금 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음.

섬유쿼터 해제 目前,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섬유쿼터제 2005년 1월 1일 부로 전면 폐지 예정

- WTO 섬유협정(ATC)이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섬유쿼터제를 사실상 올해 말까지 완전 폐지해야 함.
- 섬유쿼터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될 경우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EU 등은 아시아 개도국의 섬유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 (World Bank)
-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미국 섬유시장 개방영향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대형 의류회사 및 유통업체에게 선택된 공급자 (supplier of choice)가 될 것으로 예측

□ 중국산 섬유류를 겨냥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미국은 1997년 미-중 양자간 협약에 따라 중국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적용
- WTO 섬유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제도를 연장
- 2004년 10월 8일 이후 CITA(섬유협정이행위원회)에 제출된 對중국 섬유세이프가드 발동 및 청원 현황은 아래 표 참조
- 美 섬유업계가 섬유쿼터 해제 후 중국산 섬유류 증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은 증가할 전망.

<對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및 청원 현황>

결정일자	품 목	카테고리	조치 적용기간	비 고
'03.12.24	니트 패브릭	222	'03.12.24 ~'04.12.23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청원
'03.12.24	면 및 인조섬유 브래 지어	349/649	상동	
'03.12.24	면 및 인조섬유 드레 싱 가운	350/650	상동	
'04.10.22	양말	332/432/ 632일부	'04.10.29~ '05.10.28	부과 중
'04.11.12	모직 바지	447	청원	
'04.11.08	기타 합성필라멘트 직 물	620		
'04.10.27	코 우 머 사 (c o m b e d cotton yarn)	301		
'04.10.15	면 및 인조 섬유 속옷	352/652		
'04.10.13	남성/남아용 & 여성/ 여아용 면 직물 셔츠 와 블라우스	338/339		
	남성/남아용 면 및 인 조섬유 셔츠(단, 니트 류 제외)	340/640		
	남성/남아용 & 여성/ 여아용 인조섬유니트 셔츠와 블라우스	638/639		
	남성/남아용 & 여성/ 여아용 인조섬유 바지	647/648		
"04.10.8	남성/남아용 & 여성/ 여아용 면 바지	347/348		

자료원 : OTEXA (The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s)

- 페루는 그동안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국에만
임시적으로 적용해왔으나, 페루의 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
는 중국측이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에 품목수를 다소
완화시키고 조치 범위 대상국을 전세계로 확대

- '04년 10월 14일부터 향후 200일간 총 20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으나,

-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 외의 100
여개 국가들이 제외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대만, 인도, 홍콩
등도 2,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등 실
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EU 등의 다른 주요 섬유수입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중
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전망

부시 집권 2기, 수입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될 전망

□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제 2기 집권 행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 전망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추이 >



자료원 : 2004. 12. 14 BEA New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04년 12월 14일 美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금년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폭이 9월 보다 \$45억이 증가한 \$555억에 달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적자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 수입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는 對美 무역 흑자폭이 꾸준히 증가해, 2004년 10월 누계치가 \$110억 초과

○ 2005년 6월 시한이 만료되는 무역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재승인을 앞두고, 철강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美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부시 행정부는 중국, 한국, EU 등의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입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음.
- 공화당 정책 강령에 의하면, “미국 수출과 제조업에 피해를 주는 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보조금 제도 등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수입규제의 형태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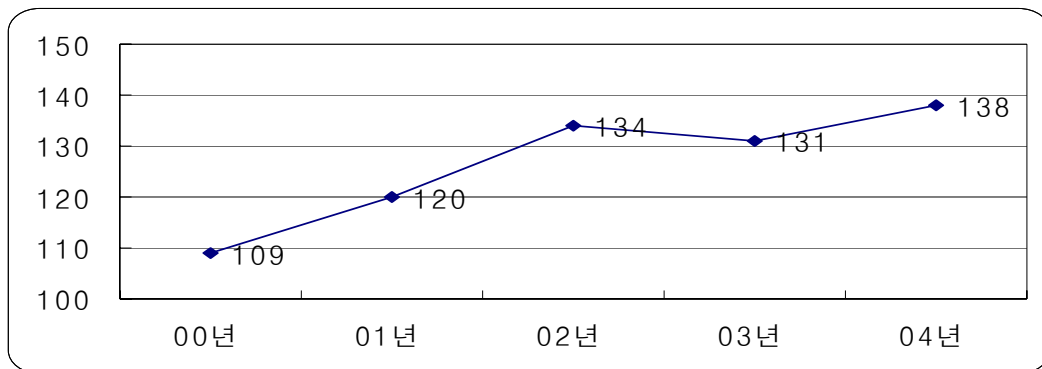
2.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가. 총 괄

□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2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38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9건이며, 조사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중으로 집계)은 29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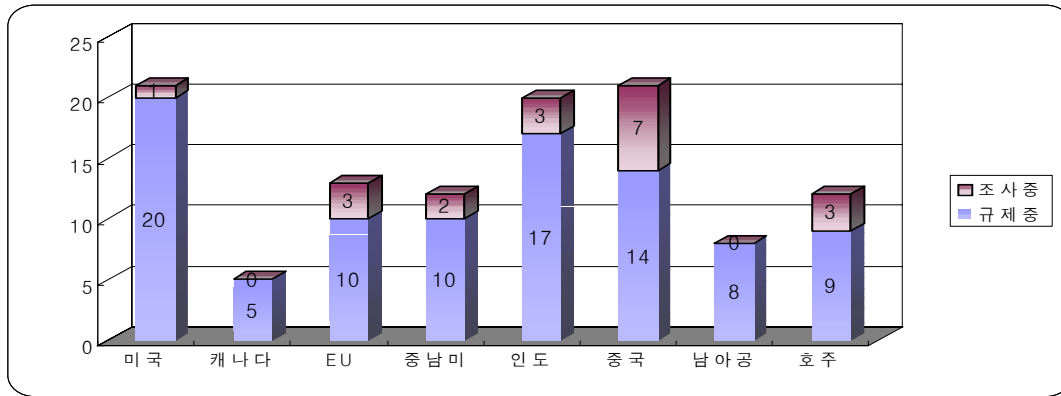
연도별 대한수입규제 추이



- 2002년까지 계속되던 수입규제 확산세가 2003년 잠시 주춤한 후, 2004년 다시 확산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24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6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36건, 섬유류 21건, 전기·전자 15건, 기타 16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15건), 인도(14건), 철강제품은 미국(16건), 캐나다(5건), 섬유류는 중남미(8건), 터키(5건), 전기·전자는 EU(4건), 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건, EU 13건, 호주 11건, 남아공 8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포함

□ 2004년 신규 피소 건은 총 28건임.

[2004년도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일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내 용
1	1. 28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EU	반덤핑
2	2. 7	금속 드리사	터키	반덤핑
3	2. 2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아르헨티나	반덤핑
4	3. 3	배관용 탄소 강관	미국	반덤핑
5	3월중	ERW 강관	호주	반덤핑
6	3. 31	골판지	중국	반덤핑
7	5. 12	비스페놀 A	중국	반덤핑
8	5. 28	합성고무	EU	반덤핑
9	6. 4	백설탕	러시아	세이프가드
10	6. 11	무수말레산	말레이시아	반덤핑
11	6. 20	아질산염	태국	반덤핑
12	6. 26	PVC	파키스탄	반덤핑
13	7. 8	녹말류	인도	세이프가드
14	7. 20	오일필터	뉴질랜드	반덤핑
15	8. 1	냉동육(제주산)	일본	세이프가드
16	8. 3	DRAM	일본	상계관세
17	8. 10	EPDM	중국	반덤핑
18	8. 27	구연산	인도	반덤핑

19	9월	electric filament lamp	러시아	반덤핑
20	10.14	섬유류	페루	세이프가드
21	11.12	핵산	중국	반덤핑
22	11.20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EU	반덤핑
23	12.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터키	반덤핑
24	12.15	백판지	호주	반덤핑
25	12.2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아르헨	반덤핑
26	12.23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호주	반덤핑
27	12.28	ECH	중국	반덤핑
28	12.31	냉장고	호주	반덤핑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12건, 철강 4건, 섬유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5건이며, 피소 형태는 반덤핑 23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1건 등임.
- 2003년 중 개시된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17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 개시된 건수는 이를 훨씬 초과한 28건에 달함.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총 신규피소건수	32	27	24	17	28
선진국	12	8	8	5	10
개도국	20	19	16	12	18

자료원 : KOTRA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미국, EU 등의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발동국 이외에 개도국에 의한 조사 개시가 총 건수의 약 60%인 18건 에 이르러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강화됨을 반증
- 2004년 중 일몰재심을 통한 기한만료 판정 및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된 수입규제 조치가 21건임.

[2004년 종료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종료사유
1	대만	강선	'03.12월 말	일몰재심
2	호주	PS Resin	'03.12월 말	일몰재심
3	태국	H형강	'04. 1월	제소철회
4	미국	열전사 리본	'04. 4월	무혐의
5	폴란드	철강	'04. 5월	EU 확대
6	캐나다	후판	'04.5.17	일몰재심
7	인도	NBR (상계관세)	'04 상반기	무혐의
8	인도	옥소알콜	'04 상반기	일몰재심
9	인도	Copper Clad Laminates	'04 상반기	일몰재심
10	인도	폴리스티렌	'04. 6월	일몰재심
11	브라질	PET Resin	'04. 6월	미소물량
12	아르헨티나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04. 6월	기한만료
13	대만	열연 H 형강	'04.6.14	일몰재심
14	호주	ERW 강관	'04.7.7	무혐의
15	남아공	아크릴담요	'04.7.18	일몰재심
16	캐나다	아연도강관	'04.7.24	일몰재심
17	인도	PVC Resin	'04. 8월	무혐의
18	인도	PSF	'04.8.30	무피해
19	중국	냉연강판	'04.9.10	부과중단
20	말련	골판지	'04 하반기	일몰재심
21	인니	PSF	'04.11.4	무혐의

주 : 대만의 강선과, 호주의 PS Resin은 2003년 말에 규제가 종료되었으나,
 “2003년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작성이후 발표되어, 동 보고서에서 집계
 계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번 종료조치 집계에 포함시킴.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4년 12월 현재 총 2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5건(조사중 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품목별로는 철강 16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5/23/1986	반덤핑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01/20/1987	반덤핑/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6/05/1991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11/02/199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2/30/1992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02/23/199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08/17/1993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9/1993	반덤핑	
08/11/1995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9/15/1998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2003. 8 일몰제심 개시, 2004.9.13일부로 지속)
05/21/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2004. 4.1 일몰제심 개시2004. 10. 21부로 지속 판정) - 한국산 : 포스코 포함 6.08%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7/27/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반덤핑 :2004.6.1 일몰재심 개시,2004.11.15부로 지속판정, 상계관세 : 2004.6.1 일몰재심 개시, 2004.12.10일부로 지속 판정)
08/06/1999	상계관세	
02/10/2000	반덤핑/ 상계관세	Carbon steel plate
05/25/2000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08/14/2000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8/18/2000	반덤핑	
05/18/2001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9/07/2001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3/07/2002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8/11/2003	상계관세	D-RAM
10/01/2003	반덤핑	Polyvinyl Alcohol
1/28/2004	반덤핑	PC 강선
03/03/2004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 판정)	반덤핑	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 2004년도 대한 수입규제 신규 피소건수는 1건임.

- 배관용 탄소강관(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3.30일 부로 개시되었으나 지난 11.3일 예비판정 결과 샘플링 한국기업 모두 미소마진 판정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판정일
배관용탄소강관	7306.10.10 7306.10.50	반덤핑	'04.3.3	'04.11.3 (예비판정결과 미소마진 판정)

- 동 품목은 2003년 3월 종료된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이었으며, 제소 관련 피소업체는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주식회사 휴스틸 등임.

☐ 중국의 철강 수요 흡수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수입규제를 주도했던 철강업체의 대외 제소가 많이 줄어든 편임.

[캐나다]

☐ 2004년 12월 현재 총 5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탄소강관	반덤핑	'82.9.14	'83.3.30	'84.6.27	'90, '95, '00년 각각 규제연장
철 근	반덤핑	'99.6.16	'99.9.14	'00.1.12	CBSA '04.8.26 일몰재심결과 덤 핑 재연소지가 있 는 것으로 판정
스텐레스봉강	반덤핑	'98.12.3	'99.2.18	'99.6.18	제 2차 중간 재 심결과 5가지 품 목 제외
구조용강관	반덤핑	'03.5.21	'03. 8.19	'03. 11.17	-
스텐레스강선	반덤핑	'03.11.21	'04. 4.2	'04. 7. 30	모든 수출자 181% 부과

☐ 2004년 들어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고, 아연도 강판과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일몰 재심결과 종료

○ 후판 (5.17)과 아연도 강판(7. 24)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

☐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Stainless Steel Wire)에 대해 18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7월 30일부로 181%의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

- 2003년 11월 21일 대만, 인도, 스위스, 미국과 함께 제소되었는데, 피소된 한국기업은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아 108%의 높은 잠정 관세가 부과된 바 있는데, 최종 판정시 잠정 관세율보다 높은 18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이루어짐.

□ 최근 WTO에서 버드수정법 보복조치 승인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각종 산업분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중에 있음.

- 수년간 미국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연목(Lumber), 곡물(Wheat), 축산품과 美 버드수정법 수혜 산업 등을 고려하여 보복 조치 대상을 결정할 예정

- 그러나, 지상사 의견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버드수정법 보복조치 잠정대상 리스트에 컬러 TV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함.

[EU]

□ 2004년 12월 현재 반덤핑 12건(조사중 3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1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4건, 전기·전자 4건, 섬유 2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3.5" 플로피디스크	반덤핑	'92.9.18	'94.9.10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반덤핑	'92.11.25	'95.3.27	관세부와 기한연장
칼라TV 브라운관	반덤핑	'99.9월	'00.10.20	
주철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99.5.29	'00.8.18	
PET칩	반덤핑	'99.11.6	'00.11.30	'03. 5월 재심 시작 '04. 3월 기업 실사
전자저울	반덤핑	'99.9.16	'00.11.3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99.10.7	'00.12.28	재심결과 반덤핑 관세율 변경(휴비스와 SK 글로 벌제외 대체로 감소)
PET 필름	반덤핑	'00.5.27	'01.8.23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01.6.1	'02.8.24	'03.5월 관세율 인하
D-RAM	상계관세	'02.7.25	'03.8.11	관세율 : 34.8%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강력사	반덤핑	'04.1.28	-	조사는 지속하되 잠정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합성고무	반덤핑	'04.5.28	-	-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반덤핑	'04.11.20	-	-

□ 2004년에 신규로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강력사, 합성고무,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3개 품목임.

-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강력사는 2003년 12월 15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2004년 1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
- 합성고무는 2004년 4월 13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소업체는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등 2개 업체임.

-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은 2004년 10월 11일 유럽와이어로프 산업협회에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2004년 11월 20일자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임.

□ 2004년 2월 철강 품목군에 대한 수입감시제도 철회

-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조치 폐지에 따라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한 것에 이은 사후 조치로서, 금년 2월 14개 철강품목군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철회하였음.

- 단, 이는 한국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역외수입품 모두에 적용

[터 키]

□ 2004년 12월 현재 총 6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이중 5건이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거 5년간 섬유류가 전체 對터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르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관세율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04. 11. 8 재심개시)	5402.43	반덤핑	'98.1.27	'99.12.6	7.06%~21.2%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11.9%~24.6%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 6월	33.7%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5	3.51%~40%
금속 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 9. 24	US\$2.2/kg
폴리에틸렌 테레프테라이트	39076020	반덤핑	'04.12.9	-	-

□ 2004년 중 신규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금속드리사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테라이트 등 2건임.

□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 세관 통관 심사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非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당수의 수입품에 대해 CE마크 및 TSE(터키표준협회) 테스트를 의무화하여 수입품이 1개월 이상 통관되지 못하는 사태 초래
- 특히, 한국산을 포함한 아시아 제품은 통관심사 과정에서 Red Line이라는 이중 검사대를 설치하여 통관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짐.
- 수입규제 세부 내역을 제대로 공포하지 않고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변경된 규제 내용을 통관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속출

[멕시코]

□ 2004년 12월 현재 2개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1	'93.8.19	'03.8.20일기준 5년간 반덤핑 규제 연장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반덤핑 관세부과 (16.03%)

□ 2004년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잡화, 신발류 등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아르헨티나]

□ 2004년 12월 현재 반덤핑 6건(조사중 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3건, 석유화학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냉연강판(CRS)	반덤핑	'01.7.19	'02.4.30	'03.1.8	반덤핑 관세부과 (60.46%)
아연철판 (Galvanized Steel Sheet)	반덤핑	'02.5.30	'02.12.16	'03.5.23	반덤핑 관세부과 (49.67%)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01.5.21	'01.11.8	'02.11.12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0.11.23	'01.8.7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반덤핑	'04.2.23	-	-	-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04.12.22	-	-	-

□ 2004년 총 2건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이루어짐.

○ 2월,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 수출 최대 효자품목이었던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해 신규 제소가 이루어졌음.

- 덤핑 제소 대상은 HS 5407류 4개 직물로서, 지난해 대 아르헨 수출이 크게 늘어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이 주요 대상임.

- 아르헨 경제생산부 상공증기처 상역실에서 책정한 한국산 직물에 대한 덤핑마진율은 160.75 - 176.89%로서 말련 등의 피제조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12월 22일 부로 한국산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아르헨티나의 대형 PET 제조업체인 Voridian Argentina S.R.L 사가 단독으로 아르헨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 브라질, 대만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진 후, 조사개시 요청이 받아들여져 12월 22일자로 공식적으로 조사가 개시됨.
- 조사개시 공고시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제품의 덤핑 혐의율도 함께 발표된 바, 한국산 11.4%, 브라질산 16.39%, 대만산 63.82% 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제소는 브라질 측의 아르헨산 PET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한데, 브라질에서의 PET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산은 미소물량 기준이 적용되어 조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對 아르헨 수출물량의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어서 현지 진출 관련 한국업체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브라질]

- 2004년 12월 현재 반덤핑 1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섬유류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	반덤핑	'00.1.12	'01.6.28	반덤핑관세 (5.2%~52.2%)
폴리에스터직물	5407.61 5407.52	세이프가드	'02.10월	'03.1.27	수출자율규제 (쿼터제)

□ 2003년 11월 개시된 한국산 PET 레진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 7월 7일자로 종결되었음.

- 한국산은 3% 미만 미소물량 기준을 적용하여 반덤핑 조사 무혐의 처리기로 판정

□ 브라질 정부는 2002. 10월 우리나라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통보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수출자율규제는 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3년에 15,607톤이며, 2004년에는 16,855톤임.

□ 최근 브라질 경기회복 및 수출호조현상 지속으로 브라질 업체들의 수입규제 요청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임.

- 2004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무역수지 흑자액도 32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04년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전년대비 소폭 완화된 상태임.

[베네주엘라]

□ 2004년 12월 현재 신발류에 대해 1건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예비판정내용
신발류	6402.20	'02.9.23	'03. 3. 20	'04. 9. 29	기존관세율 : 20%

					인상폭 : 최대 44.78%
	6403.59	상동	상동	상동	기존관세율 : 20%
					인상폭 : 최대 45.54%

주. 한국산 신발류 2개 품목(HS 640220, 640399)은 WTO에서 규정한 총수입 3%율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됨.(2004.10.15일부 확정)

[폐 루]

□ 2004년 12월 현재 섬유류 3개 품목에 대하여 1건의 잠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규제 개시일로부터 200일간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며, 200일 후에 최종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발동일	규제 내용	만료일
섬유류	6109909	'04.10.14	적정가 kg당 \$22.80	발동일로부터 200일 이후 2005. 5.1 종료
	62052	상동	적정가 kg당 \$25.86	상동
	62053	상동	적정가 kg당 \$25.86	상동

[이 집 트]

□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건뿐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타이어	4011.10, 4011.20	'98. 9월	'99.7.8	'99.10.10	반덤핑 관세 (5.5%~17%)

□ 이집트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근, 전구, 타이어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등은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現 이집트 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역자유화와 관세인하 정책임을 감안, 당분간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남아공]

□ 2004년 12월 현재 8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04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스텐레스 주방용기	'97.11.20	- '98.4.22 - 동원금속 : 무혐의 - 여타 6개사 : kg당 23.94 ~ 27.28란드 잠정관세	'98.10.21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용접관	'98.7.31	- '98.12.18 - LG금속 무혐의 - 여타업체가 수출할 경우 47.6% 잠정관세	'04년 일몰재심결과 반덤핑 관세 지속 판정
카본 블랙	'98.8.21	- '99.2.5 - 40% 잠정관세부과	'99.9.10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싱크대	'98.9.4	- '99.6.18 - 384.13% 잠정관세	'99.12.17 예비판정과 동일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광케이블	'98.10.2	- '99.8.20 - 잠정관세 부과면제	2000.3.31 반덤핑관세(49.9%)
과산화수소	'99.5.28	- '99.8.27 - 한솔화학 : 147% - 동양화학 : 167%	2000.3.3 예비판정과 동일
Suspension PVC	2000.3.27	- 2000.12.15 - 42.31% 잠정관세	2001.6.15 예비판정과 동일
연선, 로프, 케이블	2000.9.13	- 2002.02.08 - 10.4% 잠정관세	2002.8.28 예비판정과 동일

□ 2004년 6월 18일 부로 아크릴 담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

□ 스텐레스 스틸 용접관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관세율 : 47.6%) 부과 기간을 5년 연장기로 잠정 결정

- 남아공 무역규제 기관인 ITAC 측에 따르면, 한국 관련 업체들이 설문서 회신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와 같은 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함.

[뉴질랜드]

□ 2004년 12월 현재 3개 품목(조사중 1건)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3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냉장고	8418.10 등	반덤핑	'01. 6. 10
세탁기	8450.11	반덤핑	'01. 6. 10
오일필터	8421	반덤핑	'05. 1. 16(예정) * '04.11.9 예비 긍정판정

□ 2004. 7월 20일자로 한국산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11월 9일자로 예비공정판정이 내려짐.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MED)는 한국산 제품의 96%가 덤핑 수입되고 있으며 덤핑마진이 -5%에서 285%에 달한다고 잠정 결론 짓고, 수출업체별로 13%에서 최고 133%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

□ 뉴질랜드는 농·목축업 위주의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호 주]

□ 2004년 12월 현재 1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4건, 철강 5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EPS	3903.11	반덤핑	'92. 1	'92. 11	'97. 1월 재심 '02. 9월 재심
PVC	3919.90	반덤핑	'99. 4	'00. 3	-
동관	7411.10	반덤핑	'00. 10	'01. 4	'04. 6. 28 재심개시 (능원금속 제외)
Polyols	3907.02	반덤핑	'01. 4	'02. 4	-
열연형강	7216 일부	반덤핑	'01. 11	'02. 7	'04. 3. 4 INI 스틸 요청으로 재심개시
세탁기	8450.11 8450.20	반덤핑	'02. 7	'03. 9	'04. 8. 31 재심개시
HDPE	3901.20	반덤핑	'02. 10	'03. 12	'04. 11. 4 재심개시 (대림제외)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LLDPE	3901.10	반덤핑	'02. 10	'03. 12	'04. 11. 4 재심개시 (현대석유화학 제외)
열연강판	7208.51 7208.52	반덤핑	'03. 8	'04. 4	'04.9.9일자 공고통해 재심 개시(동국제강 제외)
백판지	4810 등	반덤핑	'04.12.15	-	-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730630/60	반덤핑	'04.12.23	-	-
냉장고	841810/21	반덤핑	'04.12.31	-	-

□ 2004년에는 한국산 ERW강관(Electric Resistance Welded Circular Hollow Section of Iron & Steel) 및 백판지,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냉장고에 대한 총 4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나, ERW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산업무피해 판정으로 종료됨.

- 지난 8월 11일 ERW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덤핑으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가 미미하다(negligible)는 이유로 종료됨.
- 호주 Amcor Packaging사의 제소가 받아들여져 지난 12월 15일부로 백판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소업체는 한솔제지와 대한펄프 등임.
- OneSteel Trading Pty Ltd, Smorgon Steel Tube Mills Pty Ltd, Orrcon Operations Pty Ltd에 의해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에 대한 조사가 개시
-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12월 31일부로 개시
 - 우리의 對 호주 수출 5위 품목 (MTI 4단위 기준)으로 2003년 US\$ 7,300 만불 수출에 이어 2004년 11월 누계기준으로만, US\$8,100 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명실 공히 호주 냉장고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 가전제품의 對 호주 수출량 증가에 따라, 냉장고에 이어 여타 가전제품에 대한 조사개시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對호주 가전제품 수출실적(MTI 2단위 기준) (단위 :US\$ 백만)

해당년도	2003	2004(1~11)
수출액(전년대비증가율)	425(38%)	503(27.2%)

[중 국]

□ 2004년 12월 현재 對韓 반덤핑 규제는 총 21건(조사중 7건)으로, 한국은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총 35건(조사중인 것 포함)의 반덤핑 조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5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3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 7. 9	'99 .6. 3	55~78%
폴리에스테르필름	반덤핑	'99. 3.16	'99.12.29	'00. 8.25	13~46%
스텐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 6.17	'00. 4.13	'00.12.18	6~58%
염화메틸렌	반덤핑	'00.12.20	'01. 8.16	'02. 6.20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01. 8. 3	'02.10.22	'03. 2. 3	2~48%
폴리에스터칩	반덤핑	'01. 8. 3	'02.10.29	'03. 2. 3	5~52%
아크릴레이트	반덤핑	'01.10.10	'02.12. 5	'03. 4.10	2~49%
아트지(동판지)	반덤핑	'02. 2. 6	'02.11.26	'03. 8. 6	4~7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 3. 6	'03. 1. 7	'03. 9. 6	0~6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 3.19	'03. 4.16	'03. 9. 9	7~38%
PVC	반덤핑	'02. 3.29	'03. 5.12	'03. 9.29	6~84%
TDI	반덤핑	'02. 5.21	'03. 6.10	'03. 11.22	3~49%

페놀	반덤핑	'02. 8. 1	'03. 6. 9	'04. 2. 1	3~144%
클로로포름	반덤핑	'03. 5.30	'04. 4. 8	'04.11.30	96%
광섬유	반덤핑	'03. 7. 1	'04. 6. 16	-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반덤핑	'03. 12.17	'04. 8. 3	-	28~35%
골판지	반덤핑	'04. 3. 31	-	-	-
비스페놀 A	반덤핑	'04. 5. 12	-	-	-
EPDM	반덤핑	'04. 8. 10	-	-	-
핵 산	반덤핑	'04. 11. 12	-	-	-
ECH	반덤핑	'04. 12. 28	-	-	-

주1. 냉연강판은 '04년 9월 10일 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했으므로 피규제 품목서 제외

□ 2004년도에 신규 피소된 우리나라 제품은 골판지, 비스페놀 A, EPDM, 핵산, ECH 등 총 5건임.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신규 제소가 대다수를 차지함.

[2003년 對韓 신규제소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골판지	4804.31,4804.41,4804.51 ,4805.24,4805.25	반덤핑	2004.3.31
비스페놀 A	2907.23	반덤핑	2004.5.12
EPDM	4002701,4002709	반덤핑	2004.8.10
핵산	29072910	반덤핑	2004.11.12
ECH	-	반덤핑	2004.12.28

□ 주요 특이사항

○ 폴리에스테르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04.12.29부로 종료 예정이나 연장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상무부는 '04.10.13일 스텐레스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05.4.13일 부로 종료예정임을 공표

- 2003년 9월 9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합성고무의 경우, 현대석유화학의 요청을 중국 상무부가 수용하여 2004년 12월 13일부터 재심(복심)이 진행 중임.

[일 본]

-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01.4.23	'02.7.27	○ 덤핑마진 : 0-13.5% ○ 피소기업 : 대한합성, 고합, 새한인더스트리, 삼영합성 등 30개사
DRAM(하이닉스)	상계관세	'04.8.3	-	-
냉동육	세이프가드	-	-	○기간 : '04.8.1 - '05. 3

- 2004년 신규 피소 건수는 총 2건임.

-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이 지난 6월 16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D-RAM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8.3일자로 조사 개시 결정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일,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자국기업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이 상계관세 조사신청 자격을 갖도록 함.
- 현재 미국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는 잠정판정이 난 상태이므로, 동 분쟁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일본의 상계관세 조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

○ 냉동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 2004년 8월 1일부로 냉동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으며, 2005년 3월까지 조치가 지속될 전망

□ 최근 들어 전지·전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허·지재권 침해로
이유로 하는 對 한국 제소가 증가하고 있음.

○ 삼성- 후지쯔 PDP 분쟁, 마츠시타-LG 플라즈마 패널 분쟁, 도시바-하이닉스 플래시메모리 분쟁 등은 모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제소를 시작한데서 비롯됨.

○ 이는 일본이 2003년 3월 정부상설 기구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여 지재권 보호정책을 강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

□ 세이프가드 관련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

○ 농림수산물을 주된 대상으로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 실시

-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물이 주요 감시대상임.

- 1단계는 감시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분기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재지정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은 수입국 전체이나 특히, 가지 토마토, 피망 등은 한국의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품목이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됨.

[대 만]

- 2004년 12월 현재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시멘트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Portland cement	'01. 6월	'02. 7월	110.99%~126.81%

- 2004년 6월 14일 부로 열연형 H 형강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됨.

[인 도]

- 2004년 12월 현재 반덤핑 규제 19건(조사중 3건)과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2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4건, 전기·전자 2건 섬유류 2건, 기타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 목	규제 내역
반덤핑 규제중 (16개 품목)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심(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692.12-2,314.8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아크릴 단섬유	○ HS코드 : 5501.30, 5503.30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01.8월 재심(유지) ○ A/D관세 : \$0.16-0.366/kg

구분	품 목	규 제 내 역
반덤핑 규제중 (16개 품목)	SBR (합성고무)	○ 98. 4 조사개시, 99. 4 잠정관세, '99.8 확정관세 - '04. 7. 26일 재심결과,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 A/D관세 : 0.92루피-10.57루피/kg
	Sodium Cyanide (NaCn)	○ 99. 3 조사개시, 99.12 잠정관세, 00.6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 : 톤당 68,02루피와 수입품 도착가격 차이
	광섬유	○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2.32-8.96/km ○ 99. 12. 29일 부로 반덤핑 관세부과, DGAD에 의해 2003.12.22일자로 재심이 개시되어 진행중
	EPDM	○ HS코드 : 4002.70 ○ 99. 8 조사개시, 00. 5 잠정관세, 00. 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2,418루피
	폴리에스터 필름	○ HS코드 : 3920.69 ○ 00. 3 조사개시, 00. 11 잠정관세, 01. 5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 : \$0.356-0.982/kg
	배터리 (LLAB)	○ HS코드 : 8507 ○ 01. 01 조사개시, 01. 4 잠정관세, 02.12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 A/D관세 : \$1.904-3.930/kg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POY (Partially Oriented Yarn)	○ HS코드 : 5402.42 ○ 01. 8 조사 개시, 01. 11 잠정관세, 02.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터키 ○ A/D관세 : \$0.360-0.605/kg
	PIB (Poly Iso-Butylen)	○ HS코드 : 3902.20 ○ 01. 9 조사개시, 02. 1 잠정관세, 02.10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EU,태국,브라질,일본,싱가폴 ○ A/D관세 : 톤당 \$1,037.7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반덤핑 규제중 (16개품목)	압연롤 (Forged Roll)	○ 대상품목 : HS8455.30 ○ 02.8 조사개시, 03.1 잠정관세, 03.8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A/D관세 : 톤당 \$2,762.79-2,851.91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가성소다 Caustic Soda)	○ HS코드 : 2815.11, 2815.12 ○ 02.5 조사개시, 02.12 잠정관세, 03.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중국 ○ A/D관세 : 톤당 \$295.2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 대상품목 : HS2832.10 ○ 02.11 조사개시, 03.4 확정관세, 03.12 확정관세 ○ 제조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034.76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 대상품목 : HS2836.40 ○ 02.12 조사개시, 03.6 잠정관세, 04.2 확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9.45-123.86
	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	○ 대상품목 : HS2903.12 ○ 03.2 조사개시, 03.10 잠정관세, 04. 8. 18 확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22.96-154.8/MT
	Propylene Glycol	○ HS code : 2905.32 ○ 대상국 : 한국, 싱가포르, 미국, EU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03.8 조사개시, 04. 8. 20 확정관세 부과 ○ 한국/미국산 : 46.87%, EU: 30.15%, 싱가포르: 7.64%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중 (1개품목)	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PPG)	○ HS code : 3907.2099/91 ○ 02.5 조사개시, '04.1 잠정관세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브라질 ○ A/D관세 : 톤당 U\$1,463.71과 수입품의 도착지 가격과의 차액
반덤핑 조사중 (2개품목)	톨루엔 (Toluene Di-Isocyanate)	○ HS code : 2929.10 ○ 대상국 : 한국, 대만, EU, 일본, 미국, ○ 제조자 : Narmada Chemature Petrochemicals Ltd ○ 03.10 조사개시
	구연산 (Citric Acid)	○ '04. 8. 27 조사개시
SG조중 (1개품목)	녹말류	○ 04.7.8 조사개시

□ 2004년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건의 신규제소가 이루어짐.

- 한국산 녹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7월 8일부로 개시되었으며, 8. 28에는 구연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 2004년 하반기에 PVC Paste Resin, 폴리에스터단섬유(PSF)만 2건의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배터리(LLAB)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현재 DGAD(인도 상공부 반덤핑국)에서 재무부에 조치 철회 권고를 해놓은 상태임. (일반적인 경우 재무부는 DGAD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

□ 인도 정부가 2005년까지 WTO에 양허한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2004년 기존의 최고 관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데 이어, 일부 전자부품,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연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인도 제조업계의 반덤핑 규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 ☐ 2004년 12월 현재 4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2건)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제지류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제소일	진 행 상 황
무수푸틸산	2917.35	반덤핑	'02.4.22	최종판정 대기중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 9. 16일자로 7~10%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일부로 59.64%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10.11	반덤핑	'03.2.10	인니 반덤핑 위원회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피해없음으로 잠정결론

주.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에 대한 조사 결과, 인니 반덤핑 위원회는 산업무피해 판정을 내렸으나, 무역부 및 재무부에서 최종 조사종결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제품은 조사 중인 것으로 분류

- ☐ 교역 상대국이 인니 상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시 보복적 성격으로 상대국 제품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PSF의 경우 2004년 7월 27일자로 조사가 종료되었으나, 한국이 인니산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조사가 재개됨.

- ☐ 일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규제 가능성 존재

- 섬유 및 직물류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 인니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 對韓 수입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 인니가 자국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규제 가능성은 수급상황에 따라 다소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태 국]

- 2004년 12월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 2건과 석유화학제품 1건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열연강판	7208등	반덤핑	'02.7월	'03.6월	○ 반덤핑 관세율 13.96% ○ 피소업체: 全한국업체
스텐레스 압연강판	7219.32 등	반덤핑	'02.11월	'03.3월	○ 반덤핑 관세율 50.99% ○ 피소업체: 全한국업체
아질산염	2808등	반덤핑	'04. 6월	-	○ 피소업체: 동부그룹, 한화그룹, 휴켄스

- 국제 철강가격 급등에 따라 공급부족을 우려한 태국정부가 열연강판 (HS Code : 7208, 7211)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2004. 3. 20 - 9. 19) 잠정 중단한 후, 부과 재개

- 그러나, 건설 자재로 사용되는 steel rod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신 공항의 기한내 착공 및 신규 SOC 프로젝트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반덤핑 관세 조치 철회를 재검토중

- 태국상무부내 반덤핑 위원회에서는 일본기업의 반덤핑 재심요청을 적극 수용기로 결정함.

- 2004년에는 한국 제품을 상대로 총 2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중 1건은 현재 증거불충분 사유로 기각되어 현재 1건에 대한 조사만 진행중임.

- 태국 무역청은 Thai Nitrate사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한국산 아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피소업체는 동부 한농화학 등임.

- 2004년 7월 30일 부로 한국산 BR, SBR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사유로 8월 4일 기각됨.

- 태국 정부가 FTA를 대외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수입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산업 혹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소 요청이 있을 경우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말레이시아]

- 2004년 12월 현재 총 2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제지류 1건, 석유화학제품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인쇄용지	반덤핑	'03.1.16	'03.9.26	○ 반덤핑 관세 : 43.24% ○ 피소업체 : 보워트-한라제지, 대한제지, 펜아시아제지, 세풍기
무수말레산	반덤핑	'04.6.10	-	○ '04.10.7 예비공정판정 (26.34%) ○ 피소업체 : 용산화학주식회사

- 2004년 6월 10일 한국산 무수말레산에 대한 조사 개시
 - TCL Industries (Malaysia) Sdn Bhd에 의해 제소되어 2004년 6월 10일부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10월 7일 예비공정 판정이 내려진 상태임.
 - 예비판정시 한국 업체의 덤핑 마진율은 26.34%로 산정되었고 최종 판정은 예비판정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내려질 예정임.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와 일부 섬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입 의존형 구조를 띄고 있어 말련 정부의 수입규제는 심한 편이

아니며 반덤핑 조사 건수는 연평균 3건 내외로 2004년 신규 제소 건수는 1건에 불과함.

- 중간재 가공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제재가 미미한 편이며,
- 우리나라로부터는 전자부품 및 철강을 수입하고, 원유와 LNG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편임.

[러시아]

- 2004년 12월 현재 1건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1건의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조사중 2건).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백설탕	세이프가드	'04. 6월 초	-	○ 우크라이나산 백설탕이 주요타겟 ○ 늦어도 2005년 3월초까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발표될 예정
electric filament lamps	반덤핑	'04. 9월	-	-

- 2004년 중 총 2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되었으나, 한국산 제품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 조사개시
- 러시아는 우리나라 산업과 상호보완적인 구조임을 감안, 우리나라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

[파키스탄]

- 2004년 12월 현재 총 1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6월 26일 한국산 PVC Resin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지난 10월 23일 예비공정판정이 내려진 상태임.

품 목	규제 형태	조사개시	예비판정	비 고
PVC Resin	반덤핑	'04. 6. 26	'04. 10.23 덤핑 마진 : 40. 18%	○ 피소업체명 : LG화학, 한화석유화학 ○ 최종 판정예정일: '05.1.22

- 현지 경기 활성화 및 경제 고성장으로 수입수요가 급증세를 나타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현지 생산되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 산업용 화학제품군이 덤핑제소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예상됨.

다. 2004년 수입규제 특기사항

한국, 미국 및 EU와의 보조금 분쟁서 승리

[DRAM]

□ WTO 분쟁 패널은 美 상무부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배 최종 판정

○ WTO 분쟁 패널은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행위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 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

- WTO 협정상 보조금이란 “정부 혹은 공공 기관에 의해 특정 기업 혹은 산업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기여” 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협정 위반이 성립하려면 우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보조금 수혜 제품 수입에 따른 수입국 국내산업의 산업 피해가 증명되어야 함.

- 그러나, 보고서 결과, 한국 정부의 행위가 보조금 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판정 난 이상 산업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 향후 절차

- 최종 보고서는 내년 2월경 회원국 회람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

- 그러나, 미국은 WTO 패널 판정 내용에 대해 상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 상소심 종결 후 내년 5~6월 경 패널 최종보고서가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심에 패배해 판정 이행기간을 요구할 경우 내년 말이나 20056년 초에 상계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상소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보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됨.

□ 이번 판정은 EU-하이닉스간 DRAM 보조금 분쟁과,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의해 보조금 조사가 개시된 하이닉스 DRAM의 향후 조사 지속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U와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를 부과 혹은 조사 개시 명분도 미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금번 WTO 판결을 통해 이들 조치 혹은 조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음.

[한-EU 조선 분쟁]

□ WTO 분쟁 패널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잠정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선 업계 구조조정이 WTO의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는 EU의 주장과는 달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WTO 패널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과 삼호조선, 대동 조선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부채 탕감 방식의 구조조정이 EU의 주장과는 달리 WTO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 한국수출입 은행이 제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

- 이에 따라 우리 조선업계가 짊어졌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세계시장에서 덤핑 공세를 펼쳤다는 비난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한국이 EU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WTO에 맞제소 한 것에 대해서도 부분 승소

[버드수정법- 對美 무역보복조치 승인]

- 2003년 6월 WTO는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 후 같은 해 12월까지 철폐토록 권고
 - 미국이 기한 내 법안을 철폐하지 않자, WTO는 우리나라 및 EU를 포함한 7개국에 대해 피해액의 72% 범위 내에서 對美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 (2004. 11.26)
- 한국은 세제와 유리도자재, 냉동수산물(대구, 아귀,가오리) 등을 포함한 보복대상 품목을 제출한 바 있으며, 보복 규모는 2003년 기준 약 US\$1,000만임. (EU의 보복규모는 약 US\$5,000만, 일본은 약 US\$8,000만으로 추산)
- 미 의회가 조속히 버드수정법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 7개 제소국들의 보복조치는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버드수정법 경위

- 2000. 10. 28 Byrd 수정법 발효
- 2000. 12 11개국 WTO 공동제소 (한국, EC,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니, 태국, 캐나다, 멕시코)
- 2001. 2. 6 양자협약 개최
- 2001. 9. 21 Byrd 수정법 시행령 발효
- 2001. 10. 25 패널 구성
- 2002. 9월 패널 보고서 배포
- 2003. 1월 상소기구 보고서 배포
- 2003. 12.27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 2004. 8. 31 8개국에 대해 대미무역보복조치를 승인(호주, 태국, 인니는 1월초 공동제소국에서 이탈)
- 2004. 11. 26 DSB 승인 절차 완료에 따라, 사전 제출한 품목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를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 확보(상기 8개국서 브라질 제외 7개국)

3. 2004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괄

□ 2005년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2004년까지 연평균 5%를 보이며 고속 성장했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한풀 꺾일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FRB의 잇따른 금리 인상 단행 등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美 달러화 약세에 따른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국가간 통상마찰로 인한 보복성 조치 확산 우려

- 美-중, 아르헨-브라질 등의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보복성 수입규제 남발의 우려가 있음.
- 2004년 중국 정부가 광섬유에 대해 예비공정판정을 내린 것은 미국이 중국산 가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짙음.
- 또한 브라질의 PET Resin, 아르헨의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도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보복성 조치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임.
- 상기 케이스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한데 묶여 피소당한 바 있어, 2005년에도 보복성 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제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선진국의 경기회복 가속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고 성장으로 철강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계적으로 동 산업내 수입규제가 약화되었으나, 2005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경우 동 부문에서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
- 국별로는 미국, EU, 호주 등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도 등의 개도국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남아공에서는 제지류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EU에서는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Ferro molybdenum 우회덤핑 혐의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및 인도에서는 2004년 대부분의 수입규제가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었던 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 남아공에서는 한국산 제지류와 밸브류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 국내산업 협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점에 미루어 보아,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임.
- 한편, 미국와의 DRAM, EU와의 조선 보조금 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EU 및 일본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산 조선 수주량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나. 주요국별 전망

[미 국]

□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10월 US\$ 555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질적으로는 약한 달러 정책 고수할 듯.

- 대외적으로는 강한 달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무역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약한 달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

□ 부시 행정부 2기 경제 아젠다

○ 통상 압력 및 분쟁 해결 등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세제 개혁, 사회보장 제도 개혁, 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 등 보다 대내적인 면에 치중해 있음.

○ 자유무역주의적 통상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공정한 통상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상과 회담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방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철강제품 수요 감소시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현재 높은 수요에 힘입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감소시, 중국산 철강은 궁극적으로 세계 철강가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동 산업 내 보호 무역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U]

□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이 높아질 전망

○ 역외국에 대한 신규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EU집행위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EU의 반덤핑/상계관세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개시된 신규수입규제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이를 훨씬 초과한 12건에 달함.

- 확정(최종) 조치 역시, 2003년 한해 동안 총 5건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연간실적을 넘는 6건을 기록

○ 타겟 국가의 경우, 일본은 타겟에서 벗어났으며 대신 러시아가 주요 규제 대상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중 하나가 될 전망

□ 섬유가 다시 통상정책 핵심권으로 부상

○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섬유 쿼터와 관련해,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이미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건수가 증가세

- 2004년 상반기 중 수입대상국을 불문하고 4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됨.

○ 섬유의 경우 반덤핑과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가 주로 활용될 전망

- EU 집행위는 이미 섬유쿼터 폐지 이후 급격한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할 방침임을 수차례 천명

- 특히, 중국산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와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 특별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활용가능성도 집행위가 언급함으로써 중국산 섬유, 의류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활발해질 전망
-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 이외의 역외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도 동반 상승 할 것임.

□ 철강제품 중 하나인 Ferro molybdenum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 잠재

- EU는 현재 중국산 Ferro molybdenum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는데, 최근 일부 한국 업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혐의 하에 세관검사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한국 업체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잠재

[중 국]

□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말 긴축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제 경제 사회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업종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가시화되면서 우려했던 소비시장의 급랭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대책 못지않게 내수소비시장 진작에도 정책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향후에도 경기 급랭 우려는 크지 않음.

□ 현재 중국 제품이 해외 주요국으로부터 연이어 피소됨에 따라, 미국 등을 상대로 한 보복성 수입규제로 맞서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기업과 한데 묶여 피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지난 6월 16일 예비판정이 난 광섬유의 경우, 미국 코닝사를 겨냥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 한데 묶여 반덤핑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최근 미국이 중국산 가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데 이어 중국은 광섬유 업체인 미국 코닝사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

□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

- 중국은 올 1분기 중 거액의 무역적자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었으나, 이후 무역적자액이 감소후 흑자로 반전되면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상정책의 급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단위 : US\$ 억)

해당 月	4	5	6	7	8	9	10	11
무역수지 월별누계치 (1월~해당月)	-107	-86.6	-68.2	-48.8	-9.5	39.3	109.7	208.4

- 이와는 대조적으로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일로

[對 중국 무역수지 흑자 추이]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1-11월)
對中무역수지	4,888	6,354	13,201	18,661

자료원 : KOTIS

- 이에 따라, 최근 다소 잠잠해진 무역불균형 해소 주장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어 논리 확립이 필요

□ 2005년에도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2004년 12월 현재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20건 중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것이 14건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 확대에 따라 향후 수입규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임.

[인 도]

□ 2005년에도 인도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구가 높을 전망

- 인도는 최근 수년간 최고 기본 관세를 매년 5%씩 인하하는 등 수입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해 옴에 따라 국내업체의 수입규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2005년부터는 수입관세를 아세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 특히 2005년부터는 관세율을 소품목에 걸쳐 일률적으로 인하하기 보다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져 특정 품목(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2년 \$75억에서 '03년 \$137억로 증가하였고, 2004년 1~5월 기간 동안 수입증가율이 32%, 무역적자도 \$57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 인도 업계로부터의 수입규제 강화 압력이 증가할 전망
- 특히, 2003년 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17억으로 급증한데다, 2004년 1~5월 기간 동안 \$7억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 인도 반덤핑 피소 품목이 대부분 화학제품에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0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그 외에 플라스틱, 철강, 섬유 등의 제품도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임.

[남아공]

□ 자국통화 초강세 현상과 낮은 이자율로 인한 소비수요 증가, 3% 이상의 견고한 경제성장, 2010년 월드컵 관련 특수 등으로 인해 5% 이상의 수입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지만, 2004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현재 무역수지 불균형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과 대비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와 고용보호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업체로부터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와 고용 보호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 규제 예상 품목

○ 한국산 인쇄용지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남아공업체에서 반덤핑 제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남아공 관련기관(ITAC) 접촉 결과, 현재까지 정식으로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남아공 기업들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남아공 정부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제소장이 접수될 경우 조사개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 한국산 밸브류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0%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남아공 밸브 협회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주장하며 남아공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중남미]

- 2005년에도 꾸준히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브라질-아르헨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보복성 수입규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국산 제품도 묶여 제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중남미 국가 순방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산도 묶여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물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아르헨티나>

- 2003년도 8.7%, 2004년도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미화 대비 폐소화 가치가 절상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 급증 추세
- 특히 브라질 산 섬유제품 및 가전제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아르헨 관련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브라질산 섬유류에 대한 사전 수입승인제가 발동되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왔음.
- 섬유직물업계에서는 브라질과 중국의 주요 경계대상국으로 뽑고 있음.
- 금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아르헨 방문으로 중국이 아르헨 정부로부터 시장 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받음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강력한 규제책이 예상되고 있음.

- 한국산만을 타겟으로 한 특별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목도되지 않고 있으나, 브라질산이나 중국산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에 묶여서 피소될 가능성이 점증

- 예컨대, 금년 10월 한국산 PET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아르헨과 브라질간 통상마찰 와중에 아르헨산 PET에 대한 브라질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보복조치로 아르헨 업계가 브라질산을 겨냥하여 덤핑 제소한 것인데 한국산도 묶여 피소

□ 우리나라와의 통상 관계

- 아르헨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와 쌀 관세화 유예협상 중에 최대 통상 현안이 되어 왔던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해왔음.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 동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對韓 무역 흑자가 감소세에 이를 경우, 한국산 가전제품 및 폴리에스터 수지 등 여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아르헨 양국간 교역에서 對아르헨 무역수지가 2002년 적자로 돌아선 이래, 2003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도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아르헨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하여 수입규제를 남발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

<브라질>

- 경기 회복세 가시화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수출의 경우 2004년 US\$965억에서 2005년에는 US\$1,014억 으로

5.1%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의 경우 2004년 US\$635억에서 2005년 US\$768억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04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주종 수출품목 비중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70.2%, 화학공업제품 8.2%,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8.1%, 섬유류 7.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3%, 철강금속제품 2.0% 등으로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 등의 경우 브라질 생산이 미미하거나 조립생산을 위해 부품수입이 불가피하므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음.
- 브라질의 주요 수입규제품목은 브라질 국내기업들이 오랫동안 생산활동을 벌이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신규 진출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품목들이 많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인조섬유장섬유사, 편직물, 인조섬유 등 섬유관련 제품을 들 수 있음.

<멕시코>

- 최근 섬유 및 의류, 신발, 가구, 완구류 부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및 밀수품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에서의 수입규제는 완화될 전망
- 관련업계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동 품목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 멕시코 정부는 의류, 신발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동 부문 원자재 관세 인하 및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산업 부문 및 철강부문 제조업체들이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됨.

○ 2004년 철강 및 비철금속 부문에 대한 규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산 철강제품은 주로 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하고 있어 수입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호 주]

□ 미국, 태국과의 FTA가 발효함에 따라, 호주의 제조업계는 경영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호주업체의 자구책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호주의 반덤핑 제소가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가전제품 및 제지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기한이 만료되는 반덤핑 조치의 경우, 일몰재심을 통해 부과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 협상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계의 덤핑규제 강화 로비는 물론 제소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은 여전히 반덤핑 피소 가능 1, 2위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음.

○ 세탁기외의 여타 가전제품도 피소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용 타이어와 신문용지 등은 언제든지 피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품목으로 알려짐.

첨 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미 국	15(1)	1	5		21(1)
캐나다	5				5
EU	12(3)	1			13(3)
터 키	6(1)				6(1)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6(2)				6(2)
브라질	1			1	2
베네주엘라				1	1
페루				1	1
이집트	1				1
남아공	8				8
뉴질랜드	3(1)				3(1)
호 주	12(3)				12(3)
중 국	21(7)				21(7)
일 본	1	1(1)		1	3(1)
대 만	1				1
인 도	19(2)			1(1)	20(3)
인도네시아	4(2)				4(2)
태 국	3(1)				3(1)
말레이시아	2(1)				2(1)
파키스탄	1(1)				1(1)
러시아	1(1)			1(1)	2(2)
합 계	124(26)	3(1)	5	6(2)	138(29)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 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 타	합 계
미 국	16	2	1	1	1	21
캐나다	5					5
EU	3	4	2	4		13
터 키		1	5			6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2	1	3			6
브라질			2			2
베네주엘라					1	1
페루			1			1
이집트					1	1
남아공	2	3		1	2	8
뉴질랜드				2	1	3
호 주	4	5		2	1	12
중 국	1	15	1	1	3	21
일 본			1	1	1	3
대 만					1	1
인 도	1	14	2	2	1	20
인도네시아		2			2	4
태 국	2	1				3
말레이시아		1			1	2
파키스탄		1				1
러시아				1	1	2
합 계	36	50	20	15	17	138